

소규모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지원 안내

1 근로자건강센터란?

-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노동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(분소)를 설치하고, **근로자 건강상담, 특검 및 일검 사후관리, 작업환경 컨설팅 등 전문가(의사, 간호사 등)를 통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지원**하고 있습니다.

2 법적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**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**사후관리조치(건강상담,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)을 하도록 규정**하고 있습니다.

3 특검사후관리 신청방법



4 근로자건강센터 안내

운영인력
· 작업환경의학전문인, 간호사, 산업위생관리기사, 물리치료사, 건강운동관리사, 상담심리사 등 직업건강전문가로 구성
운영시간
·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: 평일 오전 9시 ~ 저녁 7시 · 성남분소(판교) : 오전 10시 ~ 저녁 7시
문의처
·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· 연락처 : 031) 739-9301 / 1577-6497

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

사업장명		사업장인원	총 명
사업장주소			
담당자명	직책		
담당자 연락처	전화 :	팩스 :	
	핸드폰 :		
	이메일 :		

<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>

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 신청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.

- ▶ 수집 이용목적 :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안내 및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 서비스 제공
- ▶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사무실 및 휴대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, 사업장명, 사업장주소, 질병 요관찰자 인원 및 질병 유소견자 인원
- ▶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거부할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
담당자 성명 : (서명)

본 사업장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서 위 현황에 따라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에 무료 특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주(대표) : (서명)

※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(제4조제10호)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※접수방법 : 신청서를 24년도 특수검진소견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시오.

담당자 : 주세현(산업위생관리기사)

이메일 : sehyun_health@naver.com

팩 스 : 031-750-2881

문의처 : 1577-6497 (직통번호 : 031-739-9304)